간호학과 규정집

2017년 12월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목 차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직표 ·····1

※ 업무분장표 ·····2

1. 간호학과 운영 규정 ·····3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지침 ·····8

▪ 학과발전위원회 운영 지침 ·····8

▪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운영 지침 ·····11

▪ 프로그램학습성과운영위원회 운영 지침 ·····12

2.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18

3.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 규정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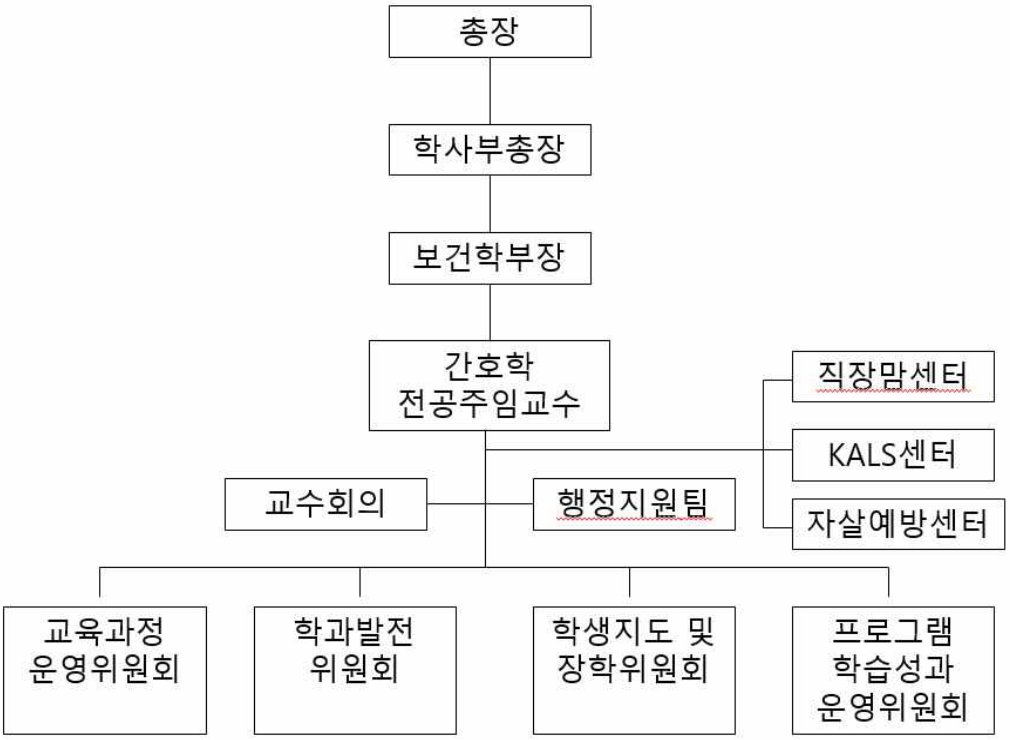
4. 간호학과 실습실실습 운영 규정 ·····29

5.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31

6. 간호학과 장학금 지급 규정 ·····33

7. 간호학과 안전관리 규정 ·····34

조 직 도


총장
학사부총장
보건학부장
간호학
전공주임교수
직장맘센터
KALS센터
자살예방센터
교수회의
행정지원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과발전
위원회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프로그램
학습성과
운영위원회

업무 분장표

구분		주요업무
교수회의	전공주임교수	· 학사 제반 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각 위원회 총괄
학과 운영 (위원회)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개정안 발의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위한 CQI 활동 관리 · 기타 전공주임교수가 부의하는 사항
	학과발전 위원회	· 학과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심의 · 학과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 ·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간담회 개최 · 학부모 및 산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 인증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사항 심의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 멘토링 제도에 의한 학생지도 운영 관련 사항 심의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배분 관련 사항 심의 ·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 및 심의 ·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운영위원회	· 프로그램학습성과 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 졸업학년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분석 및 반영 · 산업체 및 졸업생 대상 교육목적, 목표 달성도 조사 시행 · 산업체 및 졸업생 대상 프로그램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와 필요도 조사 시행 ·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행정직원	직원	학사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 및 지도
	행정조교	학사 및 행정업무, 수업관련 기자재 관리, 학생지도 및 상담보조, 전반적 안전관리 업무
	실습조교	실습실 관리, 실습실실습기자재 관리, 임상실습 관련 행정업무 보조, 실습실실습 및 임상실습 안전관리, 자율실습지원 업무

1.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운영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백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간호학과의 운영 및 과정 수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 학칙 범위 내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목적 및 목표)

① 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건강회복 및 재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간호지식과 기술,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글로벌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과학적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 대상자의 안녕촉진을 위해 간호실무기술을 능숙하게 적용한다.
- 건강관리 영역에서 상호협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한다.
- 기독교적 인성을 갖추고 국제적 간호전문리더십을 발휘한다.

제 3 조(프로그램 학습성과)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한 9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인간호에 요구되는 간호지식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②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③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④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팀 내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한다.
⑤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⑥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한다.
⑦ 간호의 법적 · 윤리적 기준과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⑧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로벌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한다.

제 4 조(학과 교수회의)

① 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②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되며, 전공주임교수가 그 의장이 된다.

③ 학과 교수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학과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발의 및 의결
- 편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심의
- 학과 전반 행정 운영 및 개선
- 학과 재정 확보 및 운용
- 각 위원회의 주요안건
- 기타

제 5 조(전공주임교수의 임무와 권한) 전공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학과 업무 방향 설정 및 제반 행정 운영

② 부서(행정) 협조사항 및 지원

③ 학과 주관 행사 주도

④ 학과 내 각종 회의 주관 및 진행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및 추천

⑥ 학과업무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⑦ 학과 내 의견 조율 및 각종 상담지도

⑧ 학과 및 학부에 관한 규칙 및 지침 제·개정(안) 건의

⑨ 학과 수업 및 졸업 관련 업무 진행 총괄

⑩ 학과 졸업 예비 사정 및 관리

⑪ 학생 · 학사 · 취업 · 진학지도 상담 및 지도

⑫ 전공(외래포함) 교수 관리 및 지도

⑬ 학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제안 추진

⑭ 학과 수업 진행 및 성적 처리

⑮ 학과 전공 시간강사 추천

⑯ 학과 조교 복무· 업무조정 및 관리

⑰ 학과 교원 근무상황 및 수업진행 현황 및 관리

⑱ 학과 안전관리 전반

⑲ 기타

제 6 조(학과운영) 학과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학과발전위원회,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프로그램학습성과운영위원회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프로그램학습성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년도 전공주임교수가 당연직으로 담당한다.

③ 학과발전위원회, 학생지도 및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년도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각 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7 조(행정직원 및 조교)

① 행정직원은 학사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 및 지도한다.

② 행정조교는 학사 및 행정업무, 수업관련 기자재 관리, 학생지도 및 상담보조, 전반적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실습조교는 교내실습실 관리, 실습실실습기자재 관리, 임상실습 관련 행정업무 보조, 실습실실습 및 임상실습 안전관리, 자율실습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실험실습비 운영)

① 실험실습비는 실습 기자재 구입비, 실습재료비, 실습자료 및 실습지침서 제작비, 실습지도 회의비, 학생실습지원비, 실습기관 실습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학과는 교수회의를 통해 매년 실습비에 관한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 한다.

③ 실험 실습비는 재학생 1인당 연간 20만원 이상 확보하고, 실험실습비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④ 학과는 예산의 집행정도를 매학기 1회 교수회의에서 공개하여 투명성을 기한다.

제 9 조(교원의 자격)

박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경력 2년 이상 인자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준용조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②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 및 제 규정 혹은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

하거나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간호학과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간호학과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전공주임교수와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3 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이며,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리한다.

② 전공주임교수의 위임 시에는 업무위임을 지정받은 전임교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회의소집) 정기 회의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개정안 발의

②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평가

③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위한 CQI 활동 관리

④ 기타 전공주임교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의결)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한다.

▪ 학과발전위원회 운영 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학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3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회의소집) 정기 회의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조(기능) ① 위원회는 학과 발전을 위해 학과 운영 개선 요구 수렴 체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학과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과의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학과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수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체계는 [별첨 1]과 같다.

- 학부모 및 산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간담회 개최
- 인증평가 결과 분석
- 기타

제 6 조(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 8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별첨 1] 학과 운영 개선 요구 수렴 체계

대상		조사명	조사 내용(하위 영역)	조사방법	조사 주기
학생	재학생	재학생 만족도	· 교육목표, 과정 · 교수학습 활동 · 교육시설, 평가 · 학생시설 · 교육환경 · 대학 및 학부(과)	온라인 설문	연 1회 (4월)
	졸업생	졸업생 만족도	· 전공교육과정 · 현장실습교육 · 교양교육 · 비교과과정 운영 · 교육목적, 교육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학습성과 중요도, 필요도 · 핵심기본간호술 중요도, 필요도 · 교원의 전문성 · 강의실 환경 · 실습실 환경 · 산업체 · 휴게시설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	연 1회 (4월)
학부모		학부모 만족도	· 교육서비스 · 자녀 인성 및 능력 변화 · 전반적 만족도 · 학생 복지지원	FGI*	연 1회 (9월)
산업체		산업체 만족도	· 교육목적, 교육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학습성과 중요도, 필요도 · 핵심기본간호술 중요도, 필요도	우편설문	연 1회 (4월)

* Focus Group Interview

▪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운영 지침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3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회의소집)

정기 회의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멘토링 제도에 의한 학생지도
②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배분
③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처리
④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

제 6 조(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프로그램학습성과운영위원회 운영 지침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프로그램학습성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과 및 교과외분과로 구분된다.

제 3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 4조(회의소집)

정기 회의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프로그램학습성과 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별첨 1~3]

② 졸업학년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분석

③ 산업체 및 졸업생 대상 교육목적, 교육목표 달성도 조사 시행

④ 산업체 및 졸업생 대상 프로그램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와 필요도 조사 시행

⑤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제 6 조(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 8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별첨 1]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내용 및 성취수준

내 용	수행준거	성취 수준	
PO1. 전인간호에 요구되는 간호지식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전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상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전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간호지식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중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전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간호지식을 실무에 적용한다.
		하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전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간호지식이 있다.
PO2.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기본 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대상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간호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을 상황에 적절하게 선택, 적용한다.	상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숙련되게 실행한다.
		중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하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본 간호술의 지식, 기술, 절차를 알고 있다.
PO3.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상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탁월하게 적용한다.
		중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하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에 대한 지식이 있다.
PO4.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팀 내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보건의료팀 내 업무를 조정하고 전문직 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한다.	상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 팀 내 업무를 탁월하게 조정하고 상호협력한다.
		중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 팀 내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한다.
		하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 팀 내 업무 조정과 상호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PO5.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간호실무에서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상	간호실무에서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요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간호문제를 해결한다.
		중	간호실무에서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요하여 대상자의 단순한 간호문제를 해결한다.
		하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다.
PO6.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한다.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직 간호사가 달성해야 할 간호실무 표준과 전문직 표준을 확인한다.	상	간호전문직 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전문직 표준을 확인한다.
		중	간호전문직 관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확인한다.
		하	간호전문직의 특성과 간호전문직 표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확인한다.
PO7. 간호의 법적·윤리적 기준과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간호 관련 법률과 생명의료윤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해하며 이를 간호실무 수행에 통합,적용한다.	상	간호의 법적 윤리적 기준과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다양한 간호실무에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중	간호의 법적 윤리적 기준과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하	간호의 법적 윤리적 기준과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한다.
PO8.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로벌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기독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계와 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상	다양한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
		중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로벌 리더십을 이해한다.
PO9. 과학적	간호연구수행에 대한	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한다.	지식을 갖추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근거기반 간호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중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한다.
		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별첨 2]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표준안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도구 (반영률 %)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기준		성취 기준
PO1. 간호지식	졸업시험 (100) : 4학년 말 시행	4-2	총점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하여 계산함	상	전 과목 총점의 80% 이상 득점하고 과락 없음 (과락: 과목별 40%이하 득점)	졸업학년 학생의 90%가 '중'수준 이상
				중	전 과목 총점의 60%~80%미만 득점하고 과락 없음	
				하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 득점하거나 과락 있음	
PO2. 핵심기본 간호술**	핵심실기 역량강화 기초프로그램 (100) : 2학년 2학기 말 시행	2-2	평가 항목의 핵심술기 점수를 각각 계산함	핵심실기 역량강화 기초 및 심화		2학년 2학기 말(임상실습 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상	모든 핵심술기점수가 90점 이상임	
				중	80점 이상 90점 핵심술기가 1개 이상	
	핵심실기 역량강화 심화프로그램 (100) : 4학년 1학기 말 시행	4-1		하	80점 미만인 핵심술기가 1개 이상	4학년1학기 말 학생의 80%가 '중'수준 이상
PO3. 의사소통술	1-2 의사소통론 점수(50)	4-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4-2 시뮬레이션 실습 치료적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점수(50)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하	60점 미만	
PO4. 조정과협력.	3-2 정신간호학실습2 조정과 협력 학습성과 평가점수(25)	4-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4-2 노인간호학실습 조정과 협력 학습성과 평가 점수(25)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4-2 시뮬레이션실습 조정과 협력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점수(50)			하	60점 미만	
PO5. 비판적사고	4-2 성인간호학실습4 사례보고서 점수(50)	4-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4-2 시뮬레이션 실습 비판적 사고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점수(50)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하	60점 미만	
PO6. 간호전문직관	1-1 간호전문직 개론 간호전문직관 보고서 점수(30)	4-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4-1 간호관리학 실습 점수(70)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하	60점 미만	
PO7. 법과 윤리	4-2 보건의료관계법규 점수(40)	4-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1-2 간호윤리 점수(40)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3-2 지역사회간호학2 정책보고서(20)			하	60점 미만	
PO8. 글로벌 리더십	봉사시간(40) (60시간 이상: 40점, 40시간 이하: 20점, 40시간 초과~60시간 미만: 1시간에 1점씩으로 환산하여 계산)	4-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외국어 공인 점수(40) (TOEIC 600점이상: 40점, TOEIC 500-600점 미만: 32점, TOEIC 500점 미만:24점 으로 환산하여 계산)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4-2 간호관리학 2 교과목 리더십보고서 점수(20)			하	60점 미만	
PO9. 간호연구	3-1 간호연구 점수(50)	3-2	통합점수로 계산함	상	80점 이상	졸업학년 학생의 70%가 '중'수준 이상
	3-2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학술제 연구논문 점수(50)			중	60점 이상 80점 미만	
				하	60점 미만	

[별첨 3] 핵심기본간호술 역량 강화 통합 체계(BN-CCC System: Baekseok Nursing-Core nursing skill Competency Consolidation System)

단계	교육과정		평가시기 (학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성취수준	달성 기준
기초	교과	기본간호학실습1 2 건강사정실습	2	• 20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 • 동영상 제출, 수행 평가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로 수행 평가	상: : 핵심기본간호술평가표 점수 80점 이상 중: : 60점 이상- 80점 미만 하 : 60점 미만임	70% 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교과외	핵심실기역량강화 기초 프로그램		• '하'와 '중' 수준의 핵심기본간호술 선정 • 졸업생 중 임상간호사가 평가함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로 수행 평가	상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 점수 90점 이상 중 :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항목 1개 이상 하 : 80점 미만인 항목 1개 이상	70%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심화	교과	성인간호학실습1.2 아동간호학실습1,2 여성건강간호학실습1,2 정신간호학실습1	3	• 임상실습 교과목 연계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 · 수행하도록 함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를 이용한 수행 평가	상 : 핵심기본간호술평가표 점수 80점 이상 중 : 60점이상 80점 미만 하 : 60점 미만	70%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교과외	BLS provider 프로그램		• 교내 BLS center에서 교육 후 수행 평가	상 : BLS 필기시험 21점/25점 이상, 실기시험 통과 중 : 필기시험 19점-20점. 실기시험 통과 하 : 필기시험 19점 미만. 실기시험 미통과	70%이상의 학생들이 '중'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교과	간호관리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성인간호학실습3,4 정신간호학실습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2	4	• 임상실습 교과목 연계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 · 수행하도록 함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를 이용한 수행 평가	상 : 핵심기본간호술평가표 점수 80점 이상 중 : 60점 이상-80점 미만 하 : 60점 미만임	80%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통합	교과	시뮬레이션실습	4	•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을 직접 평가함	상 : 통합술기평가표 점수 80점 이상 중 : 60점 이상 80점 미만 하 : 60점 미만	80%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교과외	핵심실기역량강화 심화 프로그램		• '상'과 '중' 수준의 핵심기본간호술 선정 • 졸업생 중 임상 간호사가 평가함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를 이용한 수행 평가	상 : 모든항목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표 점수 90점 이상 중 :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항목 1개 이상 하 : 80점 미만인 항목 1개 이상	80%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KALS provider 프로그램		• 교내 KALS 센터에서 교육 후 수행 평가	상 : KALS 필기시험 21점-25점 , 실기시험 26점-30점 이상 중 : 필기시험 19점-20점, 실기시험 26점-30점 하: 필기시험 19점 미만, 실기시험 26점 미만	80%이상의 학생들이 '중' 수준 이상을 성취한다

*핵심기본간호술평가표는 지식 5점, 태도 5점, 기술 90점(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프로토콜 80점, 숙련도 5점, 시간 5점)으로 구성됨

2.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백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 학칙 범위 내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학과 내외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공주임교수의 개정사유서와 신·구 교과과정의 대조표를 대학 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과의 학적 변동자(복학, 재입학, 편입학생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전임교원 수업시수)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교무처 규정에 준한다.

제 4 조(졸업이수학점)

① 총 졸업학점은 2018년 입학생 기준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을 합하여 140학점이다. [별첨 1]

②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백석정체성, 기초역량교육, 심화교양, 소양교양을 포함하여 총 45학점 이상이다. 다만 학과는 지정된 교양교과목 6학점(인간심리와 행동, 인문학과의 만남, 인간발달과 교육)을 전공기초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2018년 입학생 기준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전공기초 17학점, 전공필수 및 선택을 합하여 총 84학점 이상이다.

제 5 조(졸업평가) 졸업고사의 기준을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① 졸업고사는 8개 전공 교과목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로 실시한다.

② 졸업고사의 합격수준은 국시교과목 8개 과목당 40% 이상, 전체 교과목 총점 60% 이상으로 한다.

③ 졸업고사 불합격자는 당해 연도 1회의 재시험 기회를 주고, 재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 졸업할 수 없다. 차기 연도부터 최대 2회/년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6 조(편입학) 학과는 본교 학칙 에 근거하여 편입학 절차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따른다. [별첨 2~4]

- 동일전공편입은 3학년으로 편입하고, 편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학사편입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 및 지정 교과목을 선이수해야 한다.
- 타학교 학과에서 이미 수강한 교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은 전공주임교수 확인 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 편입학생은 '편입생 확인 동의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졸업요건은 당해 연도의 편입생 교육과정에 따른다.
- 의료인력양성편입과정생은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제 7 조(준용조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②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 및 제 규정 혹은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육과정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교육과정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졸업이수학점

입학 연도	교양교과목	전공기초교과목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학점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인문사회	자연과학			
2018년 입학생	39(6*)	8	9	78	6	140
2017년 입학생	36(4*)	8	10	80	6	140
2016년 입학생	40	8	10	80	6	144
2015년 입학생	40	8	10	81	8	147
2014년 입학생	40	8	10	81	8	147

* 전공기초학점과 중복됨

[별첨 2] 2018학년도 간호학과 편입생 교육과정

구 분	전 공						인정 학점	졸업 이수 학점
	학부 기초군	<핵심, 심화 , 응용>군				소계		
		핵심	심화	응용	소계			
보건학부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120학점 이상
보건학부 (전적대학 간호학과 출신 3학년 편입생)	-	-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120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자	-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90학점	120학점 이상

[별첨 3] 2018학년도 간호학과 편입생 교육과정

			1학기				2학기			
전공구분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선수과목	**학부기초군** 1학년	전공기초	인체해부학	2	2		생리학	2	2	
		전공필수	간호전문직개론	2	2		전공 학부기초, 핵심교과에서 선택	2	2	
	핵심교과 2학년	교양	**인문학과의 만남**	2	2		**인간발달과 교육**	2	2	
		전공선택	학부기초, 핵심교과에서 선택	2	2		학부기초, 핵심교과에서 선택	2	2	
		전공필수	건강사정 이론 및 실습	1	1	2	성인간호학1	2	2	
			기본간호학 및 실습1	3	2	2	기본간호학 및 실습2	3	2	2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1	1		간호연구방법론1	1	1	
심화교과 3학년		전공필수	성인간호학실습 1	2		6	성인간호학실습 2	2		6
			아동간호학실습1	2		6	아동간호학실습2	1		3
			여성건강간호학실습1	2		6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1		3
			성인간호학2	2	2		성인간호학3	2	2	
			여성건강간호학1	2	2		여성건강간호학2	3	3	
			지역사회간호학1	3	3		지역사회간호학2	2	2	
			간호연구방법론2	1	1		정신간호학실습1	2		6
			아동간호학1	3	3		정신간호학1	2	2	
							아동간호학2	2	2	
응용교과 4학년		교양								
		전공필수	성인간호학 4	2	2		성인간호학5	2	2	
			성인간호학실습3	2		6	성인간호학실습4	2		6
			정신간호학실습2	1		3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2		6
			노인간호학	2	2		노인간호학실습	2		6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	1		3	간호관리학	2	2	
			간호관리실습	2		6	보건의료관계법규	1	1	
			정신간호학2	3	3		시뮬레이션실습	1		2
			간호관리학1	3	3					
교양필수			대학예배 4학점							
			기독교인성과목 4학점							
			취창업과 진로(멘토링) 1학점							

[별첨 4] 편입생 확인 동의서

편입생 확인 동의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분반 :	학년 :	학번 :	이름 :

1. 백석대학교 편입제도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하지만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이외의 편입생은 간호학과 교육과정 특성상 2학년 과목부터 수강해야한다. 그러므로 졸업하기까지 6학기를 다녀야한다. 단, 의료인과정 편입생 및 간호학과 졸업생의 경우 4학년 편입, 전적대학 간호학과 출신은 3학년 편입으로 이수 가능하다.
2.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6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졸업을 위해 백석대학교에서 제시한 교양필수(3학년 편입생: 대학예배 4학점, 기독교인성 4학점, 멘토링1, 9학점 이상/ 4학년 편입 대학예배 2학점, 기독교인성 2학점, 멘토링1학점, 5학점 이상), 전공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한다. 전공과목 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전 공						인정 학점	졸업 이수 학점
	학부 기초군	<핵심, 심화 , 응용>군				소계		
		핵심	심화	응용	소계			
보건학부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120학점 이상
보건학부 (전적대학 간호학과 출신 3학년 편입생)	-	-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120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자	-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90학점	120학점 이상

3. 백석대학교 편입제도는 3, 4학년 동안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추가로 학점신청이 되지 않고 수료처리가 되므로 졸업이수필수 과목을 실습을 나가는 학년(3, 4학년)에 이수하도록 한다. 실습으로 인한 학점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실습 나가기 전 학년에 19학점 이내에서 교양선택과목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다. (교양선택은 불가하나 교양필수과목은 계절학기로도 강의 개설시 수강가능하다.)
4. 간호학과 졸업 자 이외의 편입생은 학부기초군, 전공핵심군(각 3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하여야한다.
5. 4학년 편입자는 가능한 간호연구2(1학기), 간호연구1(2학기), 시뮬레이션(2학기) 교과목 이수를 권장한다.
6. 5학기부터는 학점등록신청서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이름 : (서명)

3.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이하 '학과' 라 한다.) 학생의 임상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습과목) 학과의 임상실습과목은 7개 전공(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노인간호학)의 실습교과목으로 정한다.

제 3 조(실습학점 및 시간)

① 임상실습학점은 총 24학점, 1,080시간으로 편성한다.

② 임상실습교과목은 1학점 당 3시간으로 1일 9시간, 주당 4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시점에 1,000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실습운영계획 수립) 매 학기 시작 전 임상실습 전임교원은 실습목표 및 내용, 지도 방법 및 평가, 실습기관 및 부서 배치, 안전교육, 실습 전 필수점검사항 확인, 오리엔테이션 등을 포함한 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 5 조(실습간담회) ①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간담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간담회에는 임상실습지도교원 (임상실습 전임교원 및 강사),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등이 참석한다.

제 6 조(실습기관의 선정 및 실습비)

① 실습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사항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기관으로 각 임상실습 전임교원이 검토, 교수회의에서 의결하여 실습기관으로 채택한다.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병동
- 특화병원 또는 시설
- 지역사회 기관
- 기타

② 임상실습기관 실습비는 학생1인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내역은 실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③ 임상실습을 위한 기관과의 협약서는 매년 실습기간에 따라 체결한다.

제 7 조(실습기관의 임무) 실습기관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음의 각호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획된 실습시간에 충실한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습장비의 사용을 보장한다.
② 임상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을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③ 실습기관의 장은 실습학생이 문제점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제반사항은 실습협약서의 내용에 준한다.

제 8 조(실습지도) ①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에서는 실습교과목 임상실습지도교원을 배정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실습 지도를 위하여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배정한다.
③ 실습교과목 인정시수는 1학점 1시수로 한다.
④ 임상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의 학습성과 및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점 별 학생 실습시간의 10%를 지도한다.
⑤ 임상실습 전임교원의 현장실습지도 담당 시간은 전체 실습지도 시간의 30% 이상을 유지한다.
⑥ 임상실습지도교원은 각 실습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학습 성과를 성취하도록 지도한다.
⑦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실습지에서의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 출결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한 내용을 학과에 보고한다.

제 9 조(실습지도자의 자격조건) 실습지도자(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① 임상실습지도교원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소속 의료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장이 위촉한다.[별첨 1]

④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위촉기간은 해당학기로 한다.

제 10 조(실습인원 배치) ① 실습은 단위별 최대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실습은 낮 근무(day shift)와 저녁근무(evening shift)로 인원을 분배할 수 있다.

제 11 조(실습학생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① 실습학생은 실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간호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실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습학생은 실습계획에 따라 성실한 태도로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③ 실습학생은 실습 중 또는 실습종료 후 현장실습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 및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실습학생이 임상실습에 대한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재실습 또는 재시험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⑤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전 학과에서 시행하는 기초평가를 통과하고 학과 및 병원의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한다. 결석 시 최종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제 12 조(출결관리) ①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유사시에는 반드시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② 무단 결석일수가 총 실습일수의 1/4이상 일 경우(2주 실습 중 3일 이상 결석)에는 해당과목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무단결석이 2일 이내의 경우 실습점수는 B미만으로 평가한다.
③ 결석 시 임상실습지도교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석일수 만큼 보충 실습을 한다.

제 13 조(실습평가) ① 임상실습성적평가는 임상실습 전임교원의 책임 하에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평가를 포함한다.
② 실습평가 시 학생이 임상실습에 대한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재실습 및 재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상실습의 성적분류, 성적분포와 출석평가기준은 본교 학칙에 준한다.

제 14 조(원거리 실습지원) 학과는 학생에게 원거리 실습지원을 위한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실습 안전관리) 임상실습 중 안전문제 발생 시 간호학과 안전관리 규정

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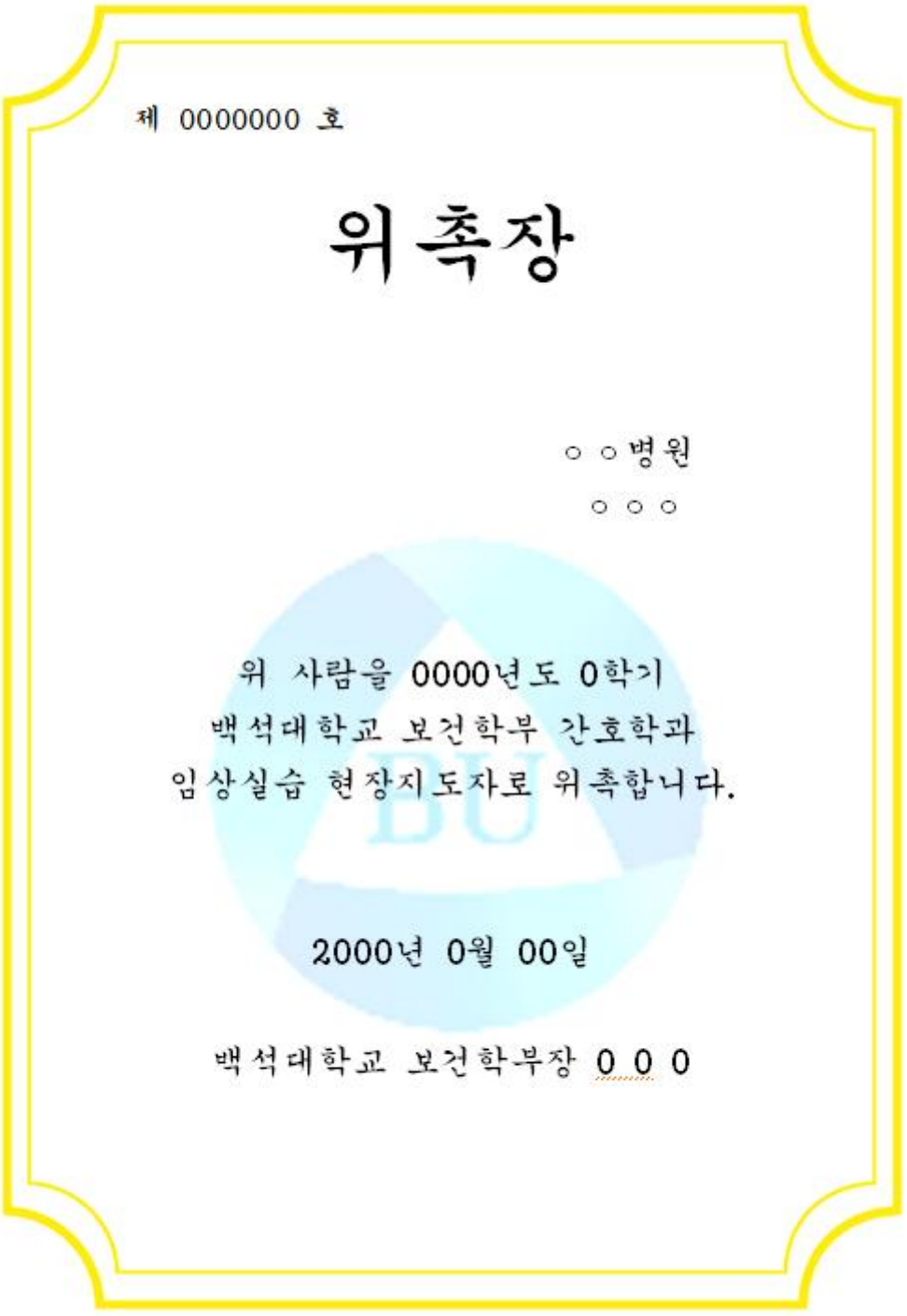
제 16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백석대학교 학칙, 규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상실습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임상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제 0000000 호

위촉장

○ ○병원

○ ○ ○

위 사람을 0000년도 0학기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위촉합니다.

2000년 0월 00일

백석대학교 보건학부장 0 0 0

4. 간호학과 실습실실습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이하 '학과' 라 한다) 학생의 실습실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습과목) 학과의 실습실실습 과목은 4개 교과목(기본간호학실습 1, 2, 건강 사정 실습, 시뮬레이션실습)으로 정한다.

제 3 조(실습학점 및 시간) 실습실 실습교과목은 1학점 당 2시간으로 운영한다.

제 4 조(실습운영계획 수립) 매 학기 시작 전 실습실실습지도교원은 실습목표 및 내용, 교수방법 및 평가 등의 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 5 조(실습간담회)

① 실습실 교육을 위한 간담회를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간담회에는 실습실실습 지도교원이 참석한다.

제 6 조(실습실실습 전임교원의 임무) 실습실실습 전임교원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습실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음의 각호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실습실에서 시행되는 수업과 자율실습 전반의 운영을 책임진다.

② 계획된 실습시간에 충실한 실습실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습장비의 사용을 보장한다.

③ 실습실 안전규칙, 실습 기자재 및 보호 장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④ 기타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규정' 에 준한다.

제 7 조(실습지도) 실습실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에서는 실습실실습 지도교원, 실습 조교를 배정한다.

제 8 조(실습인원)

① 실습실실습은 실습지도교원 대비 학생 25명 이내로 운영한다.

② 시뮬레이션실습 운영 시 시나리오 구동은 모듈 당 학생 8명 이내로 운영한다.

제 9 조(실습실 자율실습운영)

① 실습학생은 자율실습 시간을 이용하여 술기의 숙련도를 높이고 실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율실습 운영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주당 4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습학생은 자율실습 시 실습과정의 안전수칙 및 실습기자재의 사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시간의 자율실습학생명단을 작성하고 운영시간을 준수해야한다.

④ 실습조교는 실습실에 상주하여 실습실기자재 및 물품관리, 학생 출석관리 등 자율실습 전반을 지원한다.

제 10 조(실습학생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① 실습학생은 기본간호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실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습학생은 실습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③ 실습학생은 실습실실습에 대한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재실습 또는 재시험에 임해야한다.

제 11 조(실습평가)

① 성적평가는 실습실실습전임교원의 책임 하에 실습실실습지도교원의 평가를 포함한다.

② 실습실실습의 성적분류, 성적분포와 출석평가기준은 본교 학칙에 준한다.

제 12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백석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학칙 및 학칙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실습실실습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실습실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간호학과 실습기자재 관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학과 교육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자재 관리체계)

① 학과 실습실 기자재의 관리책임자의 “정”은 보건학부장 으로 하고 “부”는 전공주임교수로 한다.

② 학과 전공주임교수는 학과의 기자재 관리업무 전반과 기자재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조(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관리책임자의 “정”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전반적인 기자재 관련사항 심의 · 의결

② 관리책임자의 “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기자재 선정 및 확보계획
- 기자재 점검 및 유지보수
- 기자재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 실습실 청결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불용기자재 파악 및 반납 및 폐기처리
- 기자재 안전점검
- 각 실습실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실습실 사용일지, 기자재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제 4 조(기자재 재물조사)

① 기자재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연 1회 재물조사를 한다.

② 기자재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학기별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 5 조(기자재 수리 및 손 · 망실)

① 기자재의 유지 · 보수 계약기간 이내에 속하는 기자재는 전공주임교수가 해당

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한다.

② 기타 수리신청이 필요한 기자재는 총무처에 물품수리신청서 작성 후 재정비하여 사용한다.

③ 손·망실 처리해야 하는 기자재는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 6 조(기자재 반출 및 반납)

① 기자재의 교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전공주임교수, 학부장의 승인 하에 반출 할 수 있다

② 기자재 반납 시 전공주임교수는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기록·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

제 7 조 (불용품 관리)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전공주임교수와 실습실실습 지도교원의 회의를 거쳐 학부장의 승인 하에 불용 처리한다.

- 보수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제한되어진 기자재
- 정비수리 시 비용이 현저하게 높아 비경제적인 기자재

제 8 조(사용자의 의무 및 제한)

① 기자재 사용은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기자재 사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 및 망실된 경우 이를 변상할 수 있다.

제 9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백석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실습기자재 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실습기자재 관리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 간호학과 장학금지급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의 설립 정신에 입각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건학부 간호학과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급금액)

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교외장학금 및 BU 장학금 등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성적기준 및 선발기준)

① 학과의 장학생 선발은 본교의 장학생 선발지침을 우선하며, 그 외 장학생은 학과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2.0 이상인 자

제 4 조(지급방법) 교내외 장학금 지급은 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한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백석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7. 간호학과 안전관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실습, 학생활동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제 2 조(조직)

① 학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간호학과 전공주임교수로 정하고,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행정직원 ,행정조교, 실습조교이다.

② 학과 안전관리 조직 체계는 [별첨 1]과 같다.

제 3 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① 안전관리 조직 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④ 안전 규정의 학과 내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4 조(안전관리 실무담당자의 직무)

① 행정조교의 안전관리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학과 내 강의실 및 행정실의 일상 점검 실시 및 기록 보관
- 사고 및 위험 요인 확인 시 필요한 긴급 조치 실행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따른 지시 수행 등)
- 강의실 사용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② 실습조교의 안전관리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실습실의 일상 점검 실시 및 기록 보관
- 사고 및 위험 요인 확인 시 필요한 긴급 조치 실행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따른 지시 수행 등)
- 실습실 사용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제 3장 안전관리

제 5 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년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단,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실무담당자가 새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기 당 1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③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매 학기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시간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련 항목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행정조교에게 제출한다.

④ 학과는 안전 교육 내용과 참여 학생명단을 기록 및 보관한다.

제 6 조(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과 내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안전 관리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 7 조(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요령)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한다.

③ 안전사고 이후 처치 및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학생은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④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사고상황통보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대학의 지원부서에 제출한다.

⑤ 사고경위서와 사고상황통보서 양식은 [별첨 2]과 같다.

제 8 조(안전 수칙) 학과 내 물적·인적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과 내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① 학과 내 모든 시설 내부에서의 흡연 금지

② 학과 내 모든 사용공간에서 난방을 위한 석유난로, 가스기구 등의 사용 금지

③ 학과 내 모든 사용공간에서 취침 및 취사 행위 금지

제 9 조(전기 안전)

① 전기 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②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③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④ 전기 기기의 스위치는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⑤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⑥ 불량하거나 고장 난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다중 콘센트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제 10 조(소방 안전)
① 학과 내 모든 구성원은 소화기, 화재경보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학과 내의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위치는 [별첨 3]과 같다.
②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학과 내 소화기의 상태를 정기 점검한다.
④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은 [별첨 4]에 따른다.

제 11 조 (기타 안전)
기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에 대하여는 대학의 특별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실습실 실습 안전관리

제 12 조(감염관리) 감염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실습실 물품과 대상자를 만지기 전 ·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한다.
②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않으며,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다.
③ 바늘 끝이 사용자의 몸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④ 바늘을 부러뜨리거나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제 13 조(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일반 의료 폐기물은 혈액·체액·분비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며,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등 이다.
②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며,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한다.
③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짜(사용개시연,월,일)를 기입한다.
④ 일반의료 폐기물은 15일, 손상성 폐기물은 30일 이내로 보관한다.
⑤ 보관한 폐기물은 백석대학교에서 지정한 위탁처리업체에 수거 및 처리를 의뢰한다.
⑥ 의료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는 [별첨 5]에 따른다.

⑦ 의료 폐기물 수거 시 마다 의료폐기물 관리대장 [별첨 6]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14 조(안전교육) 매년 전공주임교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학과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제 15 조(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요령)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실습실실습 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해당 학생이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관리 실무담당자가 실습실실습 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한다.

③ 안전사고 처치 및 처리가 완료되면 사고 당사자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사고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한 후, 대학 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제 5장 임상실습 안전관리

제 16 조 (안전교육)

① 매 년 전공주임교수**는**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② 각 임상실습 기관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실습 학생은 안전교육에 필히 참여한다.

제 17 조(실습 전 필수준비사항)

① 안전한 실습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실습학생 전원은 기본적인 검진(B형 간염, 수두, MMR 등) 및 실습 기관에서 요청하는 항목의 예방접종 확인서와 건강검진 결과지를 첫 임상실습 3개월 전에, 흉부 X-ray 촬영 결과지를 매 학기 실습 전에 실습조교에게 제출한다.

② 실습조교는 취합된 결과지를 전공주임교수와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보고한 후, 실습병원에 제출한다.

제 18 조(보험가입) 학과는 대학지원부서와 연계하여 임상실습 전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험을 가입힌다.

제 19 조(비상연락망)

임상 실습 기간 중 실습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필요시 활성화 한다. [별첨 7]

제 20 조(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① 임상실습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와 처리 절차는 실습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따르며, 사고 당사자는 임상실습지도 교원과 임상현장지도자에게 사건을 보고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한다.

③ 안전사고 처치 및 처리가 완료되면 사고 당사자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는 사고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임상실습 지도교원, 전공주임교수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 관련 서류를 행정조교에게 제출한다.

제 6장 학생활동 안전

제 21 조(학생 의무) 학생은 학생활동 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얼차례, 폭행, 후배길들이기 등의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를 해서는 안된다.

제 22 조(교내외 활동)

① 학과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집단 활동 및 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는 각종 활동 · 행사 시 대표학생은 행사 개요, 교통안전, 숙소 안전여부, 화재 예방 및 각종 보험가입여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첨 8]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② 학과는 학생의 교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구급키트를 준비한다.

제 23 조(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멘토링 지도교수에게 연락하며,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 대표가 보고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한다.

③ 안전사고 이후 처치 및 처리가 완료되면 사고 당사자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멘토링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에게 보고하고 병원 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행정조교에게 제출한다.

④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와 처리 절차는 백석대학교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따른다.

제 24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백석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전관리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교육과정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학과 안전관리 조직체계



[별첨 2-1] 사고경위서 양식

사 고 경 위 서

□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오후 시 분
사고장소	

□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피공제자(사고자) 현황**

구분	성명 (사고자)	학번 (사원번호)	학과명	소속신분 (대학생 등)	연락처 (휴대폰)	주민번호 (앞자리)	이메일
1							
2							

□ **기타 참고사항 :**

□ **업무처리 담당**

담당자 성명	부서명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류진열	시설관리처	041-550-2224	010-3691-7648

피공제자(사고자)의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연구실 책임자) 전공주임교수 ㊞

[별첨 2-2] 사고 상황 통보 양식

사 고 상 황 통 보

1. 학교(기관)명 :
2. 소 재 지 :
3. 사 고 일 시 :
4. 사 고 장 소 :
5. 사고원인 및 경위(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 :

6. 피공제자(사고자) 현황 :

구분	성명 (사고자)	학과명 (연구분야명)	소속신분 (대학생 등)	연락처 (휴대폰)	피해내용
1					
2					
3					

7. 사고처리 대책 :

8. 기타 참고사항 :
9. 업무처리 담당 :

담당자 성명	부서명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류**	시설관리처	041-550-2224	010-3691-7648

위 학생의 사고 내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실습주임교수 (인)

[별첨 3] 소화기 위치 및 화재경보기 위치





[별첨 4]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 대피 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한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소화기 사용 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재시 119 신고 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끊지 않는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별첨 5]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보관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보관

1. 의료폐기물의 종류

구분		세부사항
위해 의료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 화학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봄

2.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색상 및 보관기간

종류		전용용기(도형색상)	보관시설	보관기간
위해 의료폐 기물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 이하) 또는 전용 보관창고	30일
일반 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검은색)	전용보관시설(4℃ 이하) 또는 전용 보관창고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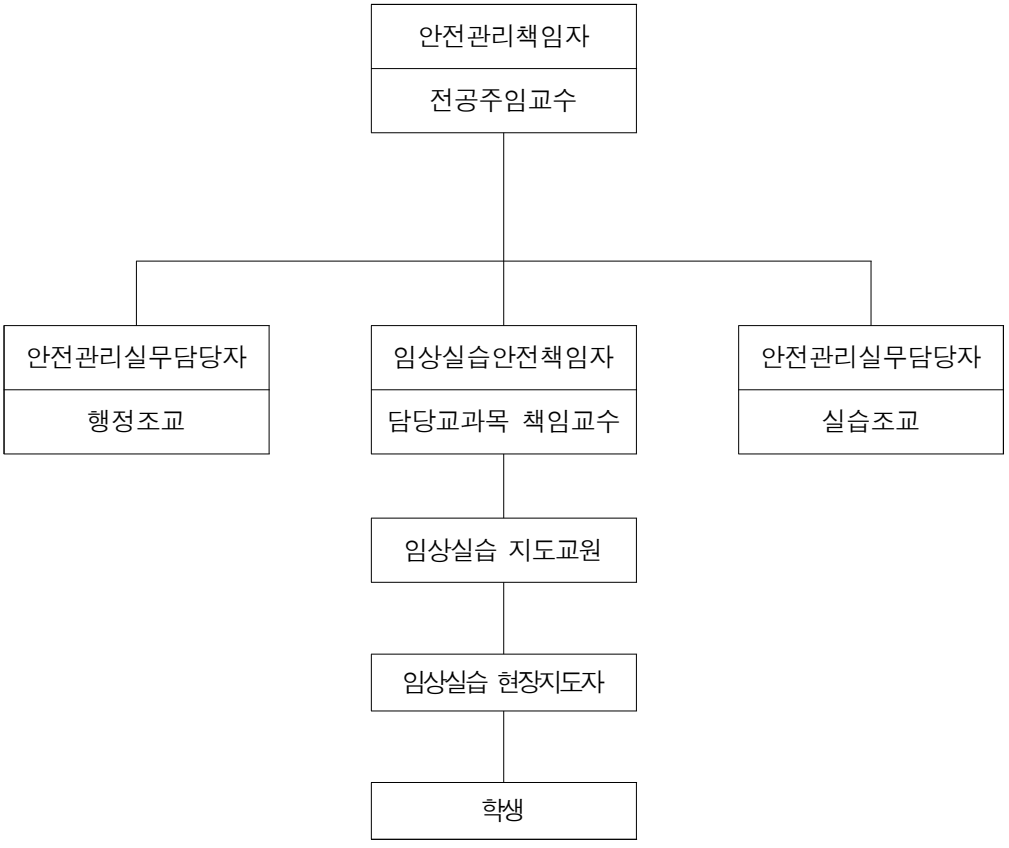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별첨 6] 의료폐기물 관리대장

의료폐기물 관리대장

구분		사용 개시일	확인		수거일	담당자	수거업체
일반	손상성		사용개시일 기입	RFID 스티커 부착			

[별첨 7] 임상실습 비상 연락망



[별첨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학생대표자 (담당자)	교사 (부장)

※ 집단 연수(행사) 개요

연수(행사)명			
연수(행사) 장소(숙소)			
연수(행사) 기간		사전 답사 여부	
참여 인원		단체 보험 가입 여부	
동행 교직원명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이동 방법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은 확인하셨습니까?	
학생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화재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간호학과 규정집

2017년 12월 29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처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Baekseo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번지 백석대학교
TEL (041) 550-2828